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53209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배은서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85,896,573원 및 그중 20,457,768원에 대하여 2024. 7. 9.부터, 65,131,576원에 대하여 2024. 7. 15.부터 각 2024. 8. 7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4. 2. 23.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4. 2. 26. 접수 제2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2. 인정근거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II. 피고 B에 대한 청구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A('C'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 운영)은 ① 2020. 4. 10. 보증원금 25,000,000원, 보증기한 2021. 4. 9.(이후 2024. 4. 5.까지 연장됨)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② 2021. 11. 25. 보증원금 55,100,000원, 보증기한 2026. 11. 25.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, ③ 2022. 4. 6. 보증원금 20,000,000원, 보증기한 2023. 4. 6.(이후 2024. 4. 5.까지 연장됨)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고 한다).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,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
나. 피고 A은 2024. 3. 21. '원금연체'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. 이에 원고는 피고 A의 대출 원리금으로 2024. 7. 9. D은행에 20,457,768원을, 같은 달 15. 중소기업은행에 65,131,57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은 85,896,573원(= 대위변제금 합계 85,589,344원 + 채권보전비용 79,089원 + 추가보증료 179,990원 + 미수보증료 48,150원)이고,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은 연 8%이다.

라. 피고 A과 피고 B은 2024. 2. 23. 피고 A이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중 1/10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,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

장성등기소 2024. 2. 26. 접수 제2295호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마.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/10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,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 (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(2) 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, 이미 원고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. 3. 21. 피고 A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원고가 2024. 7. 9. D은행에 20,457,768원을, 같은 달 15. 중소기업은행에 65,131,576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(1)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(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

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(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)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).

(2)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10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 등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위와 같은 피고 A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,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4. 2. 26. 접수 제2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III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오형석

별지